

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5. 10. 30.

2. 개정내용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|--|---|
| <p>제 1 조 ~ 제 11 조. (생략)</p> <p>제 12 조(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)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국고금, 지방세입금에 대한 등록내역은 제외합니다.</p> <p>제 13 조 ~ 제 14 조. (생략)</p> <p>제 15 조(계좌이동서비스) (신설)</p> | <p>제 1 조 ~ 제 11 조. (좌동)</p> <p>제 12 조(은행의 자동이체 임의 해지)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출금요청이 없는 자동이체 등록내역을 임의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금융결제원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제 13 조 ~ 제 14 조. (생략)</p> <p><u>제 15조(계좌이동서비스)</u> <u>① 지로/편뱅킹/금결원CMS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.</u> <u>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Payinfo.or.kr)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전송하여 조회 및 해지,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</u> <u>③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(Payinfo.or.kr)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.</u></p> | <p>금융결제원 CMS 시행세칙 반영</p> <p>계좌이동서비스 시행에 따른 약관적용</p> |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영업점, 인터넷뱅킹 이용매체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,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.